

의안번호	2200230
의 퇴 인	김태호의원
회 답 일	2024. 10.25
추 계 번호	24D23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을 폐지하고 창원지방법원 및 창원가정법원에 양산지원을 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96억 2,100만원, 2029년 16억 8,2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629억 600만원(연평균 125억 8,100만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창원지방법원 및 창원가정법원 소속 양산지원 신설 (안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5] 및 [별표7])	29,621	28,335	1,618	1,650	1,682	62,906	12,581

- 주: 1. 창원지방법원 및 창원가정법원 소속 양산지원 신설(안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5] 및 [별표7])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이고 양산지원이 신설되면 「검찰청법」 제3조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지청을 둘 수 있으므로 양산지청도 같이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현행 지원과 지청 현황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2025년 3월 1일부터 양산지원을 운영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 동안 양산지원과 양산지청 청사를 마련하고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까지 사무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3. 양산지원과 양산지청은 2025년 3월 1일부터 운영하므로 2025년 인건비(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사무실 임차료는 10개월분을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별표1](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별표2](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별표3](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5](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및 [별표7](시·군법원의 관할구역)	양산시를 관할하는 울산지방법원 소속 양산시법원을 폐지하고, 울산가정법원의 관할구역(울산광역시, 양산시)에서 양산시를 제외하며, 창원지방법원 및 창원가정법원 소속 양산지원을 신설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별표1](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별표2](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별표3](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5](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및 [별표7](시·군법원의 관할 구역)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양산지원이 신설되면, 「검찰청법」 제3조¹⁾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지청을 둘 수 있으므로 양산지청도 같이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
 - 양산지원과 양산지청이 설치되면 현행 양산시법원, 울산지방법원과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담당하던 사건, 수사 등이 이관되므로 양산시법원은 전체 직원, 울산지방법원과 울산지방검찰청은 직원 중 일부가 재배치되는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에서는 현행 42개 지원 및 지청 현황 등을 활용하여 양산지원 및 양산지청 공무원 정원, 청사 대지 및 연면적 등을 추정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양산지원 및 양산지청의 청사 신축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공사비, 부대경비, 각각 10명, 11명의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와 청사 입주 전까지의 사무실 임차료
 - 개정안에 따라 양산지원이 신설될 경우 관할 인구수는 35만 5,122명으로 추정되고, 현행 42개 지원 및 지청의 공무원 1인당 관할 인구수로 양산지

1) 「검찰청법」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을 둘 수 있다.
 ④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원의 예상 관할 인구수를 나누면 공무원 정원은 양산지원 69명, 양산지청 48명²⁾으로 예상됨

- 개정안 부칙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양산지원과 양산지청을 운영하기 위하여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 동안 양산지원과 양산지청의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가정
 - 양산지원과 양산지청의 공무원 정원에 근거하여 청사의 대지면적과 연면적을 추정하면 양산지원은 대지 12,903㎡, 연면적 7,521㎡, 양산지청은 대지 11,808㎡, 연면적 6,960㎡의 청사 필요³⁾
 - 현행 양산시법원의 연면적은 933㎡로 개정안에 따른 양산지원 운영에 필요한 면적과 차이가 크고 주변의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 개정안에 따라 양산지원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가정⁴⁾
 - 청사 신축이 완료되기 전에 양산지원과 양산지청이 운영되므로 2025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의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으로 가정
 - 현재 양산시법원의 공무원 5명은 양산지원 소속으로 승계되고 울산지방법원에서 54명, 울산지방법검찰청에서 37명이 전입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개정안에 따른 공무원 증원 인원은 양산지원 10명, 양산지청 11명⁵⁾으로 추정
- 양산지원과 양산지청이 설치되는 경우 판사와 검사가 증원될 수 있으나, 판·검사의 증원여부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과 「검사정원법」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신축 면적 산정과 증원 대상에서 제외
- 소비자물가상승률⁶⁾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
- 개정안 부칙에서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2) 현행 42개 지원 및 지청의 공무원 1인당 관할 인구수는 각각 5,161명, 7,411명이고 양산지원의 예상 관할 인구 수는 355,122명으로 이를 활용하여 공무원 정원을 추정하면 양산지원 69명(=355,122명÷5,161명), 양산지청 48명(=355,122명÷7,411명)

3) 현행 42개 지원 및 지청의 공무원 1인당 대지면적은 지원 187㎡, 지청 246㎡, 1인당 연면적은 지원 109㎡, 지청 145㎡이고 양산지원과 양산지청의 공무원 정원을 곱하여 청사 대지 및 연면적 산출

4) 다만, 기존 양산시법원의 대지 및 청사 처분 수입은 추계에서 고려하지 않기로 함

5) 법무부의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제1심 민사본안 소액사건 누년비교표에서 울산지방법원 관내 접수건수는 총 8,775건이고 양산시법원은 1,756건으로 양산시 관련 사건의 비율은 20%로 추정되어 현행 울산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검찰청의 정원(각각 271명, 184명)에 적용하면 전입되는 공무원 수는 각각 54명, 37명으로 추정. 양산시법원 공무원 5명, 울산지방법원 등의 전입 인원을 고려하면 공무원 증원인원은 양산지원 10명(=69명-5명-54명), 양산지청 11명(=48명-37명)으로 예상

6)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7.)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	3.6%	2.6%	2.2%	2.2%	2.1%	2.1%	2.1%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

가. 양산지원과 양산지청 청사 신축

- 양산지원과 양산지청 청사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매입비, 공사비, 부대경비
- 개정안에 따라 양산지원과 양산지청 청사의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공사비, 부대경비는 2025년 280억 5,900만원, 2026년 265억 5,200만원으로 총 546억 1,100만원으로 추정
 - 청산 신축을 위한 토지를 2025년에 매입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토지매입비는 각각 14억 4,600만원, 13억 2,400만원으로 추정
 - 토지매입비는 대지면적, 경상남도의 평균 개별공시지가, 보상배율을 곱하여 산출
 - 대지면적은 양산지원 12,903㎡, 양산지청 11,808㎡로 추정되고, 2022년 기준 경상남도의 평균 개별공시지가(한국부동산연구원, 개별공시지가 주요 통계 자료)는 32,596원/㎡이며, 최근 3년(2020~2022년) 경상남도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8%를 곱하면 2025년 기준 41,062원/㎡
 - 보상배율은 기획재정부의 지역별·지목별 보상배율(「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의 [별표 1])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2.73배율
 - 따라서 양산지원과 양산지청의 토지매입비용은 2025년 기준 각각 14억 4,600만원, 13억 2,400만원으로 총 27억 7,000만원
 - 양산지원과 양산지청 청사 신축에 따른 공사비와 부대경비는 각각 269억 2,400만원, 249억 1,700만원으로 추정
 - 공사비는 청사의 연면적에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유형별 공사비 단가(공공청사 중 유사사례의 2023년 기준 평균 단가 3,007,244원/㎡)를 곱하여 산출하고 2025년과 2026년에 50%씩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 양산지원 및 양산지청의 청사 연면적은 각각 7,521㎡, 6,960㎡로 추정
 - 공사비 단가는 최근 3년(2021~2023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5.0% 적용
 - 부대경비는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말하고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공종별 효율⁷⁾(설계비: 4.01%, 감리비: 1.01%, 시설부대비: 0.23%)을 앞서 산출한 공사비에 적용

7) 업무시설이므로 제2종(보통), 중급 효율 적용

[표 2] 청사 신축에 따른 비용 추정: 2025~2026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합계
양산지원	토지매입비	1,446	—	1,446
	공사비	12,468	13,091	26,924
	설계비	511	537	
	감리비	126	132	
	시설부대비	29	30	
	소계	14,580	13,790	28,370
양산지청	토지매입비	1,324	—	1,324
	공사비	11,538	12,115	24,917
	설계비	473	497	
	감리비	117	122	
	시설부대비	27	28	
	소계	13,479	12,762	26,241
합계		28,059	26,552	54,6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양산지원과 양산지청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 양산지원과 양산지청 설치 시 증원이 필요한 공무원 수는 각각 10명, 11명으로 추정되고 직급별 증원 인원은 법원⁸⁾과 법무부⁹⁾ 소속 전체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

[표 3] 직급별 증원 인원 추정

(단위: 명)

직급	직급별 비율		증원 인원	
	법원	법무부	양산지원	양산지청
고위공무원단	0.1%	0.1%	0	0
3급	0.5%	0.1%	0	0
4급	3.1%	1.2%	0	0
5급	10.2%	3.9%	1	1
6급	15.5%	19.8%	2	2
7급	12.0%	34.8%	1	4
8급	22.8%	20.2%	2	2
9급	35.8%	19.9%	4	2
합 계	100%	100.0%	10	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8) 대법원의 '2023년 사법연감'의 법원공무원 정원 통계에 근거함

9) 인사혁신처의 '2024년 인사통계연보'의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인원 통계에 근거함

□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을 증원하는 경우, 인건비는 2025년 13억 9,800만원, 2029년 16억 8,200만원으로 추정

- (보수) 양산지원과 양산지청의 각 직급별 증원 인원예 직급별 1인당 보수를 곱하여 산출
 - 직급별 보수는 대법원과 법무부의 2024년도 예산 각목명세서에 근거하여 봉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를 합한 금액
 - 보수는 2024년 2.5%, 이후에는 최근 3년(2022~2024년) 공무원 보수 평균상승률 1.9% 적용

[표 4] 직급별 1인당 보수 추정: 2023~2029년

(단위: 만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대법원	5급	8,138	8,341	8,500	8,661	8,826	8,994	9,165
	6급	7,001	7,176	7,312	7,451	7,593	7,737	7,884
	7급	6,042	6,193	6,311	6,431	6,553	6,677	6,804
	8급	4,726	4,844	4,936	5,030	5,126	5,223	5,322
	9급	4,087	4,189	4,269	4,350	4,433	4,517	4,603
법무부	5급	8,543	8,757	8,923	9,092	9,265	9,441	9,621
	6급	7,736	7,929	8,080	8,234	8,390	8,549	8,712
	7급	6,561	6,725	6,853	6,983	7,116	7,251	7,389
	8급	5,410	5,545	5,651	5,758	5,867	5,979	6,092
	9급	4,749	4,868	4,960	5,054	5,150	5,248	5,34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5] 공무원 증원에 따른 보수 추정: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양산지원	5급	71	87	88	90	92
	6급	122	149	152	155	158
	7급	53	64	66	67	68
	8급	82	101	103	104	106
	9급	142	174	177	181	184
	소계	470	575	586	597	608
양산지청	5급	74	91	93	94	96
	6급	135	165	168	171	174
	7급	228	279	285	290	296
	8급	94	115	117	120	122
	9급	83	101	103	105	107
	소계	614	751	766	780	795

주: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2025년은 10개월분을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관부담금) 추정된 보수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연도별 기관부담금 요율¹⁰⁾을 곱하여 산출
- (기본경비) 추정된 보수에 2024년 예산 기준 대법원과 법무부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6.2%, 6.5%를 곱하여 산출
- (자산취득비) 2025년 한 해에만 자산취득비가 발생하며 공무원 증원 인원 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1인당 자산취득비(491만원)를 곱하여 산출

[표 6]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정: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양산지원	보수(a)	470	575	586	597	608
	기관부담금(=a×요율)	62	76	78	80	82
	기본경비(=a×6.2%)	29	36	36	37	38
	자산취득비	49	—	—	—	—
	소계	610	687	700	714	728
양산지청	보수(b)	614	751	766	780	795
	기관부담금(=b×요율)	80	99	102	105	107
	기본경비(=b×6.5%)	40	49	50	51	52
	자산취득비	54	—	—	—	—
	소계	788	899	918	936	954
합계		1,398	1,586	1,618	1,650	1,682

주: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2025년은 10개월분을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사무실 임차료

□ 양산지원과 양산지청 청사 입주 전까지의 사무실 임차료는 2025년 1억 6,400만원, 2026년 1억 9,700만원으로 추정

- 양산지원과 양산지청청사는 2026년 말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까지는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으로 가정
- 사무실 임차료는 공무원 정원, 1인당 월평균환산임대료(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포함), 임차기간을 곱하여 산출
- 1인당 월평균환산임대료는 2023년 기준 13만원¹¹⁾이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10) 2025년 13.1% 2026년 13.2%, 2027년 13.3%, 2028년 13.4%, 2029년 13.5%

11)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23년도 연구용역보고서(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관한 조직설립, 운영 단가 현황 연구), 63쪽」의 임차청사 1인당 월평균 환산임대료 130.2천원/명을 참고하기로 함

[표 7] 사무실 임차료 추정: 2025~2026년

구분		2025	2026
양산지원	공무원 정원(a, 명)	69	69
	1인당 월평균환산임대료(b, 만원)	14	14
	임차료(=a×b×12개월, 백만원)	97	116
양산지청	공무원 정원(c, 명)	48	48
	1인당 월평균환산임대료(d, 만원)	14	14
	임차료(=c×d×12개월, 백만원)	67	81
합계		164	197

주: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2025년은 10개월분을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양산지원과 양산지청을 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96억 2,100만원, 2029년 16억 8,2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629억 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양산 지원	토지매입비	1,446	—	—	—	—	1,446
	공사비와 부대경비	13,134	13,790	—	—	—	26,924
	인건비	610	687	700	714	728	3,439
	사무실 임차료	97	116	—	—	—	213
	소계	15,287	14,593	700	714	728	32,022
양산 지청	토지매입비	1,324	—	—	—	—	1,324
	공사비와 부대경비	12,155	12,762	—	—	—	24,917
	인건비	788	899	918	936	954	4,495
	사무실 임차료	67	81	—	—	—	148
	소계	14,334	13,742	918	936	954	30,884
합계		29,621	28,335	1,618	1,650	1,682	62,906

주: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2025년의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는 10개월분을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현행 42개 지원과 지청의 공무원 정원, 관할 인구 수, 연면적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assembly.go.kr